

#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획본부장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은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좀으로써 구의식증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당한 상사의 지시와 하급자의 행위가 상호 감시·견제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억제될 수 있으므로 경제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 ① 공정거래법 준수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지속적인 법 집행과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간의 경쟁의식은 강한 반면에 경쟁방법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자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업계 공동협력 또는 자율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별기업들은 가격이나 입찰과 관련한 경쟁자들과의 사소한 접촉이 가격협정의 위반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공정거래와 시장질서에 관한 기초적인 인식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현상을 경쟁의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질서의 문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매번 개정될 때마다 규제내용이 강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그 적용대상과 실효성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경제 각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정거래 부분만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규제강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최근 가격담합과 내부거래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제 기업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보다는 경영상의 위험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경쟁은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며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제질서의 기초 개념이다. 한국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통해 국제경제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자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을 사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②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효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수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할 나위 없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경영위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민사상의 책임 가능성 때문에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벌칙에는 형사벌, 벌금, 과태료 등과 위반행위의 중지, 법 위반행위의 효력정지, 원상회복, 법 위반사실의 공표, 손해배상,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비록 기업이 공정거래당국과의 사건처리과정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기업경영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비싼 법적 대응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실제적인 이득이 적다.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은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무의식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에 의한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 없이 저질러지기도 하며, 설사 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고 종업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종업원이 개인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거래행위나 계약과 관련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하급자의 부당한 행위가 상호 감시·견제가 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실무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법 위반행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언론에 쉽게 알

려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정 거래당국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다.

중소기업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준수프로그램의 작성·유지비용이 크기 때문에 준수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경쟁자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담합과 카르텔과 같은 핵심적인 활동에 경영진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주 또는 최고경영진은 공정거래법에 직접 노출되므로 법 준수에 대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사건을 변호하거나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드는 법적 비용은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큰 액수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상대적 위험은 대기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구성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은 준수편람의 작성,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위상 정립과 사후관리, 그리고 기록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이란

① 공정거래법상,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어떤 심각한 위반도 하지 않기 위해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거나 또는 선언하고,

② 이러한 정신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 개인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담은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을 작성하고,

③ 준수편람의 내용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돋고, 특정행위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준수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종업원들이나 경영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④ 공정거래에 관한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자문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이러한 기관의 주관하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비한 서류들을 관리하는 기록관리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준수프로그램의 계속적 이행을 준비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 가. 준수편람의 작성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이란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표준서로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초석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① 조직이 어떤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취약한지를 조사하는 것, ② 조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준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분야를 결정짓는 것, ③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직의 어떤 민감한 공정거래분야에 대해 조언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기업을 위한 효과적

인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문서검토와 핵심 종업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취약점, 현재와 과거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기업의 활동내용과 운영방침, 그리고 경영진의 성향에 대해 파악하게 되어 준수편람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는 의사표명과 원칙천명, ② 공정거래법의 취지, 내용, 사건처리절차,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설명, ③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문제발생시의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준수편람의 작성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준수편람이 기업조직 및 영업방식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이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준수편람의 구성은 가능한 한 사원들의 업무 중심으로 구성하고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여기에 맞추어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은 기업활동을 단계별로 영업활동, 광고, 연구개발, 기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특성에 맞게 작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orth American Van Lines 같은 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것과 대리점을 위한 별도의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갖고 있다. 국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준수편람은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TRW사나 AlliedSignal사의 경우 미국과 유럽 지역의 부서를 위한 별도의 준수편람을 각각 마련

해 놓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능한 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준수편람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준수편람은 너무 복잡해서 사용할 수 없거나 너무 형식적이어서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된다.

### 나. 준수편람의 내부집행 프로세스의 구축

일단 준수편람이 작성되면 이를 전 사원에게 배포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신입사원교육이나 사원연수 등의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회사에서 시행중인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불이행하여 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좋은 방법이 된다.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 또는 이를 위한 준수편람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그 자체가 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별해 주는 최종적인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사내에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사내자문기구 혹은 외부자문기구가 최종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문기구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중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자문하며, 계약서 작성의 법률적 확인, 기업 내 각종 서류 및 기록물의 관리, 회의록이나 사업일지 그리고 정보

서류 등의 법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기록관리프로그램의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문제시 될 수도 있는 가격변화와 같은 기업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증명하는 그 당시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다.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정기적으로 어떤 기준하에 가치를 상실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 중 거래행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 보존, 폐기 등에 관한 행동지침은 기업이 불필요한 법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확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을 공정거래당국이 인지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조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행정처벌을 완화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④ 뜻는말

110년의 공정거래법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기업이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

정거래법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지가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미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도 윤리경영, 환경경영, 공정경쟁경영을 지향하는 등 각 분야별로 경영 패러다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이익과도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수편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쟁당국이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쟁당국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사후적인 조치지만 준수프로그램에 의한 법 위반행위 억제는 사전적인 조치이므로 경제효율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금정**